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3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이주환・金炳旭・김예지

김용판 · 김정재 · 서병수

양금희 · 엄태영 · 윤창현

최승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·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,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임.

이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·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·인증,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,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&D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,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·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,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무원이 아닌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「형법」에 따른 뇌물죄 등이

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,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, 가스기술기준위 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부 규정 적용시 공무 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 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,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 8조제2항제13호 신설).
- 나.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).
- 다.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의 규정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제4항).

법률 제 호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제13호 중 "독성가스"를 "독성가스(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 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안전설비의 인증업무

제34조의2제4항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제37조의2의 제목 중 "적용 시의"를 "적용에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)	제28조(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	②
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<u>독성가스</u> 중화처리 및 잔가	13. 독성가스(공기 중에 일정량
스처리사업	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
	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
	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
	<u>고압가스를 말한다)</u>
<u><신 설></u>	14. 안전설비의 인증업무
<u>14.</u> (생 략)	<u>15.</u> (현행 제14호와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34조의2(안전관리부담금) ① ~	제34조의2(안전관리부담금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	4
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	
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	
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	
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	
지의 기간에 대하여 <u>대통령령</u>	체납된 부담금
<u>으로</u>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	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
다.	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

 ⑤·⑥ (생 략)
 ⑤·⑥ (현행과 같음)

 제37조의2(벌칙 <u>적용 시의</u> 공무
 제37조의2(벌칙 <u>적용에서</u> 공무원

 원 의제) <u>신</u> 설>
 의제)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

(생 략)

-----.
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제37조의2(벌칙 <u>적용에서</u> 공무원의제)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 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

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

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